



2001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 사업실시 개선내용

편집실 제공

농림부에서는 도매시장내 포장화 우대품목 지원사업의 절차간소화를 통한 무포장농산물의 포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포장재 보조 및 상하차 보조금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사오니 농산물포장용 골판지상자의 현장영업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<사업개요>

가. 사업내용 설명

(1) 배경

-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유도로 규격출하 촉진
- 농산물의 공정·투명거래 정착 및 공영도매시장의 활성화 도모

(2) 지원대상

- 공영도매시장, 종합유통센터(물류센터)에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

(3) 사업내용

- 규격출하를 위한 골판지상자, 그물망(스티카 포함), P.E대, P.P대 등 포장재비 일부 보조(국고보조 30%, 자부담 70%) 및 출하비용 일부 지원

(4) 대상품목

- 적용품목 : 2001년 도매시장 포장화우대품목
 - 무(알타리무, 열무 제외), 배추(얼갈이배추 제외), 마늘

(5) 지원기준 및 조건

- 표준규격 출하수량에 대해 포장재비 30% 및 출하비용 일부 지원



나. 2001 지원계획(안)

내 용 별	사 업 량	사 업 비(단위 : 백만원)		
		계	국고보조	자부담
도매시장 포장화우대 품목	11,454천매	8,590	2,577	6,013

<추진체계>

가. 사업주관 기관 : 시장·군수

나. 사업담당 부서

- 농림부 : 유통정책과 (02)500-1823~4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: 품질관리과 (031)446-0126~7
- 시·도 : 농산물유통과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·도지원 품질관리과
- 시·군 : 산업과(유통과)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·군출장소
- 농 협 : 농협중앙회, 지역본부, 시·군지부

다. 대상자선정

(1) 우선 순위

- 대상품목 [무(알타리무, 열무 제외), 배추(얼갈이배추 제외), 마늘] 별 출하순서에 따라 지원

(2) 선정절차

- 대상품목별 연간 규격출하수량을 감안하여 품목별 자금집행금액 책정
- 품목별 책정 금액을 기준으로 규격출하 순서에 따라 지원

라. 사업시행

(1) 사업비집행방법

(가) 사업비 지원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·승인한 농산물표준규격 포장재에 한하여 자금 지원 (삭 제)



- 포장재에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을 표시, 단 망에는 2001. 7.1부터 표시
- 시·군 도매시장관리공사(사무소, 이하 공사)와 농협중앙회는 각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에 배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품목별, 분기별 출하물량과 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시행
- 사업단가는 포장화 미흡품목에 따르되 출하비용 일부 포함
 - 포장재비 30%에 해당하는 단일단가로 지원(별지1호 서식 적용)
 - 출하비용 일부로 수확상차비 지원(별지1호 서식 적용)
- (나) 사업비 지원절차
 - 공영도매시장
 - 출하자가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품목을 규격포장출하하여 도매시장 해당 법인에 상장하면 해당법인은 품목별, 규격별 포장재 수량을 확인한 후 규격포장 출하확인서(별지2호 서식)에 표시하고, 출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해당법인은 확인서(근거자료)를 첨부하여 관할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지급 요청
 - ◎ 포장화우대품목이 비상장품목일 경우 도매시장 관리자에게 신고한 물량에 한하여 도매시장관리자 또는 중도매인이 도매법인 역할을 수행
 - 관할 공사는 도매법인(또는 중도매인)의 지급요청서를 검토한 후 자금집행
 - 공사는 지원금 지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금집행하여야 함. 단,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포장화우대품목 규격출하 지원금을 도매법인에 우선 지급한 후 정산가능
 - 종합유통센터
 - 출하자는 출하통지서를 종합유통센터에 제출
 - 종합유통센터는 입하분에 대한 출하통지서와 현품을 대사 확인 후 규격포장출하확인서(별지2호 서식)에 표준규격확인표시를 하고 출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
 - 종합유통센터는 규격출하 지원금을 지급한 확인서(근거서류)를 첨부하여 일 단위로 지원금을 시·도 또는 시·군에 자금요청
 - ◎ 단, 시·도 또는 시·군은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



매시장포장화우대품목 규격출하지원금을 종합유통센터에 우선 자금배정한 후 정산가능

- 시·군은 종합유통센터로 도매시장 포장화 우대 지원 자금 집행
- 농협중앙회는 종합유통센터별로 포장화 우대 지원금 정산

○ 적용시기

- 2001.5.1부터 변경된 간소화된 사업비지원절차에 따라 지급
- 4월분까지 미정산분은 표준규격출하확인서(농관원발행) 제출 출하자 또는 도매법인, 관리공사(또는 중도매인) 및 유통센터에서 판매원표등에 표준규격이 확인되어있는 출하자에 한해 변경기준에 맞추어 지급

<행정사항>

가. 사후관리

(1) 지원대장 비치

- 시·군 도매시장 관리자와 농협중앙회(종합유통센터)는 일자별로 규격출하 포장재비 지원상황을 기록 보관
- 기록사항 : 지원대상자명, 품목명, 단량, 포장재종류 및 규격, 출하량, 지원수량, 지원금액, 기타 품목별 규격출하 총수량 등

(2) 교육·홍보

- 시·군 도매시장 관리자와 농협중앙회(종합유통센터)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표준규격출하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교육·홍보 실시

(3) 규격출하 지도·점검 및 평가

- 농관원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표준규격출하여부 점검
 - 표준규격출하여부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위하여 도매시장이나 종합유통센터에 출하예약물량확인서등 필요한 자료 요구
 -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 적발시는 출하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및 지원금 중단하고 도매시장이나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
 - 점검결과를 기록·관리하는 한편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고 농림부에 보고



○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포장화미흡품목에 준함

나. 보 고

- (1) 시장·군수는 도매시장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농관원 출장소에 통보하고 해당출장소는 본원에 보고
- (2) 농협중앙회장은 종합유통센터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년 2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(본원)에 통보
- (3) 시·도지사 와 농협중앙회장은 반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20일까지, 보조금 정산실적을 익년 1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본원)에 통보

다. 기 타

- (1) 이 지침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- (2) 시장·군수는 각종 특산품전, 기획전 등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 표준규격품이 출품되도록 최대한 노력
- (3) 도매시장 및 종합유통센터는 자체계획에 따라 포장재비 및 수확상차비 일부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.

확실한 광고를 원하십니까?

국내 유일 지류포장 전문지 『골판지包裝·物流』

『골판지包裝·物流』誌 배포처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▲ 포장·관련정부기관 | ▲ 포장·물류 관련단체 |
| ▲ 골판지포장 제조업체 | ▲ 골판지 원지 제조업체 |
| ▲ 골판지포장 사용업체 | ▲ Corn Starch접착제업체 |
| ▲ 접합용 접착제 제조업체 | ▲ 골판지 잉크·인판제조 업체 |
| ▲ 물류System 자동창고·패리티아저 제작업체 | ▲ 자동결속기·PP밴드 제조업체 |
| ▲ 컨테이너·특장차 제조업체 | ▲ 골판지원지 무역업체 |
| ▲ 골판지포장 기계 무역업체 | ▲ 골판지포장 기타 부차제 업체 |